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양육비 이행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7. ~ 1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8호 중 “민간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교육 및 컨설팅”을 “민간기업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제9호 중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항제4호 중 “등록·열람 및 공개”를 “공개명령 집행”으로 한다.

16. 인신매매등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17. 인신매매등 방지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18.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지표 개발, 고시 등에 관한 사항
19. 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0.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신매매등 피해 현장조사 지원,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제8조제5항 중 “가족문화과”를 “아이돌봄지원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8호 중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 및 치유”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취약·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제1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문화과장”을 “아이돌봄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관리·운영”을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자격·교육 및 노무(勞務)”를 “양성·보수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9.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및 아이돌보미 인식개선 홍보에 관한 사항

12.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3.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제4항 중 “1명(5급 1명)”을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94”를 “297”로 하고, 일반직 계 “290”을 “29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

관·통계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8”을 “50”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다음에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4”를 신설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296”을 “299”로 하고, 일반직 계 “292”를 “295”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1”을 “53”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다음에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0”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성평등정책실) ① ~ ⑩ (생략)	제7조(성평등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고용평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민간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u>	8. <u>민간기업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u> ----- -----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⑫ ~ ⑰ (생략)	⑫ ~ ⑰ (현행과 같음)
⑱ 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성희롱(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 · 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시행</u>	9. <u>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성희롱 등</u> ----- ----- ----- ----- -----
10. ~ 15. (생략)	10. ~ 15. (현행과 같음)
16. 「 <u>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에	16. <u>인신매매등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지원</u>

<u>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①9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u>등록·열람 및 공개</u>에 관한 사항 5. ~ 12. (생 략)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 ④ (생 략) ⑤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	17. <u>인신매매등 방지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u> 18. <u>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지표 개발, 고시 등에 관한 사항</u> 19. <u>인신매매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u> 20. <u>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21. <u>인신매매등 피해 현장조사 지원,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u> ①9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공개명령 집행</u>----- ----- 5.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 ⑩ (생략)

⑪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18.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생략)

⑫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신설>

⑬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20.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21. 취약·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⑭ 가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 아이돌봄지원과 -----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17. (현행과 같음)

18. -----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 및 치유 -----

19. (현행과 같음)

⑫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취약·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⑬ -----
-----.

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⑭ 아이돌봄지원과-----

분장한다.

1. ~ 6. (생략)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8.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
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
앙지원센터의 지정·운영

9.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 및 평가

10. 아이돌보미 자격·교육 및
노무(勞務)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7. -----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
한 사항

8.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
정·운영에 관한 사항

9.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
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운영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 양성·보수교육
실시 및 교육기관 관리-----

11. 아이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및 아이돌보미 인식개선 홍보
에 관한 사항

12.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에 관
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3.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⑮ (생 략)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④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u>1명(5급 1명)</u>, 정보 보호·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⑮ (현행과 같음)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1명(5급 1명)</u>,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u>1명(5급 1명)</u>-----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4</u>	<u>297</u>	+3
·	·	·	
·	·	·	
일반직 계	<u>290</u>	<u>293</u>	+3
·	·	·	
·	·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48</u>	<u>50</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신 설>	<u>24</u>	+24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 업주사 · 통계주사 · 방재 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 ·	<u>23</u> · ·	<u><삭 제></u> · ·	-23
--	---------------------	------------------------------	-----

[별표 2]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96</u>	<u>299</u>	+3
·	·	·	
·	·	·	
일반직 계	<u>292</u>	<u>295</u>	+3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51</u>	<u>53</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u><신 설></u>	<u>21</u>	+21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			

전산주사 · 시설주사 · 공 업주사 · 통계주사 · 방재 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 ·	<u>20</u> · ·	<u><삭 제></u> · ·	-20
---	---------------------	------------------------------	-----